

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

구분	질 의	답 변
1	<p><질문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23조(공사계약 체결 등) p22 <p><질의></p> <p>① 사업자가 본건 사업과 ~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수가 5인이내 이고</p> <p>③ 사업자는 본건 ~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20% 이상....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>㉠. 당해 사업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형개발형사업이며 사업설명 시 외국투자법인을 포함한 시행법인(SPC)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, 시행법인설립후 공사에 대한 시공사계약인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 하였습니다.</p> <p>㉡ 이에 사업제한을 하는 시행법인은 참여의 구성원사를 5개사 이내로 제한하는것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.</p> <p>㉢ 단, 시행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시의 구성원사에 대해선 5개사 이내로 제한하게 되면, 지역의무20%를 강제조항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.</p> <p>㉣ 관련법규를 인용하면 기획재정부 (계약예규) 공동계약운용요령[시행 2012.1.1.] 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) ⑤항. 나.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: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이하, 5%이상 (공동수급체의 구성)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 <p>㉤ 이에,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배로써, 시행법인과 시공사의 구도를 재설정하고, 지역사가 시공사로써 참여가 원활하도록, 공동구성원을 10개사 이내, 5%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.</p>	<p>•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.</p>

구분	질 의	답 변
2	<p><질문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23조(공사계약 체결 등) p22~23 <p><질의></p> <p>- 제23조 ①항의 내용중 “사업자가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수가 5인 이내”에서 5인 이내의 범위에 대한 질의? (지역업체 포함여부 즉 지역업체를 포함한 5인 이내인지 지역업체를 제외한 5인 이내 유무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업체를 포함한 5인 이내를 말하는 것이나, 기획재정부 (계약예규) 공동계약운용요령 [시행 2014.4.1.] 제9조 (공동수급체의 구성) ⑤항 나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: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, 5%이상 규정에 의해서,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.
3	<p><질문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23조(공사계약 체결 등) p22~23 제24조(사업신청자격 및 방법) p23~24 <p><질의></p> <p>① 사업신청자의 컨소시엄(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 포함 5인 이내)과 공사계약 체결할 시공사 공동수급체(5인 이내)의 관계는?</p> <p>② 공사계약 체결할 시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5인 이내로 할 경우 지역업체가 본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데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, 이는 귀청의 지역업체 참여토록 하는 공모지침서(안)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 이에 사업공고시 지역업체가 시공사로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확대(10인 이내)하여 반영되도록 요청드립니다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사업신청자의 컨소시엄 (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 포함 5인 이내)이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어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되면, 이 사업자가 본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제23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와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.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.